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22호 2023. 7. 2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23-97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거창군 고시 제2023-9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3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170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 거창군 공고 제2023-1171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4
- 거창군 공고 제2023-117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 31

<b>회 략</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26.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2065-45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6일

## 거 창 군 수

1. 고시일자 : 2023. 7. 26.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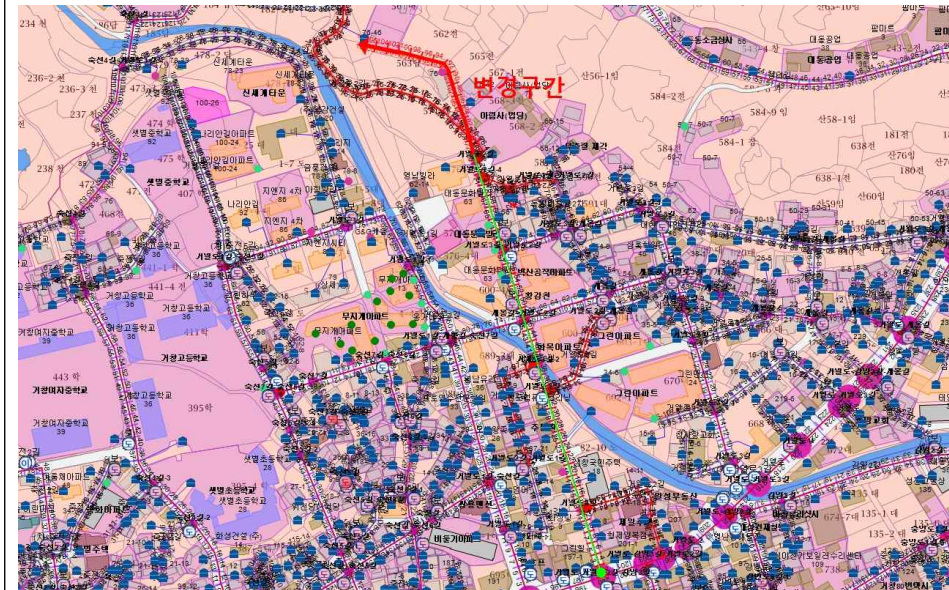
###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7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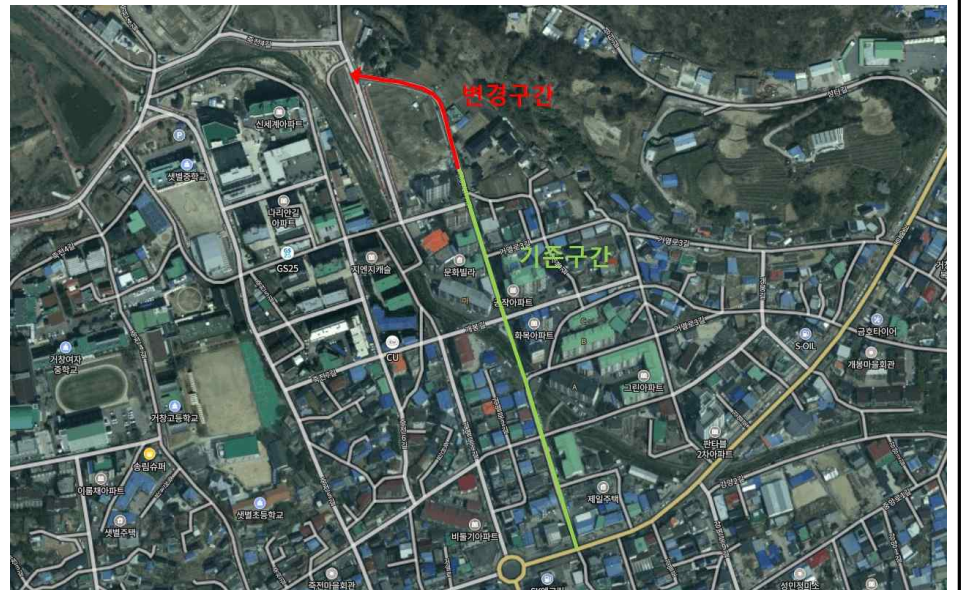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거창읍	변경 전	거열로2길	거창읍 대동리 683-1 (거열로2길 1)	거창읍 대동리 576-1 (거열로2길 76)	도면참조	16	없음	주구간 생성(연장)	직권
		변경 후	거열로2길	거창읍 대동리 683-1 (거열로2길 1)	거창읍 대동리 559-2 (거열로2길 108)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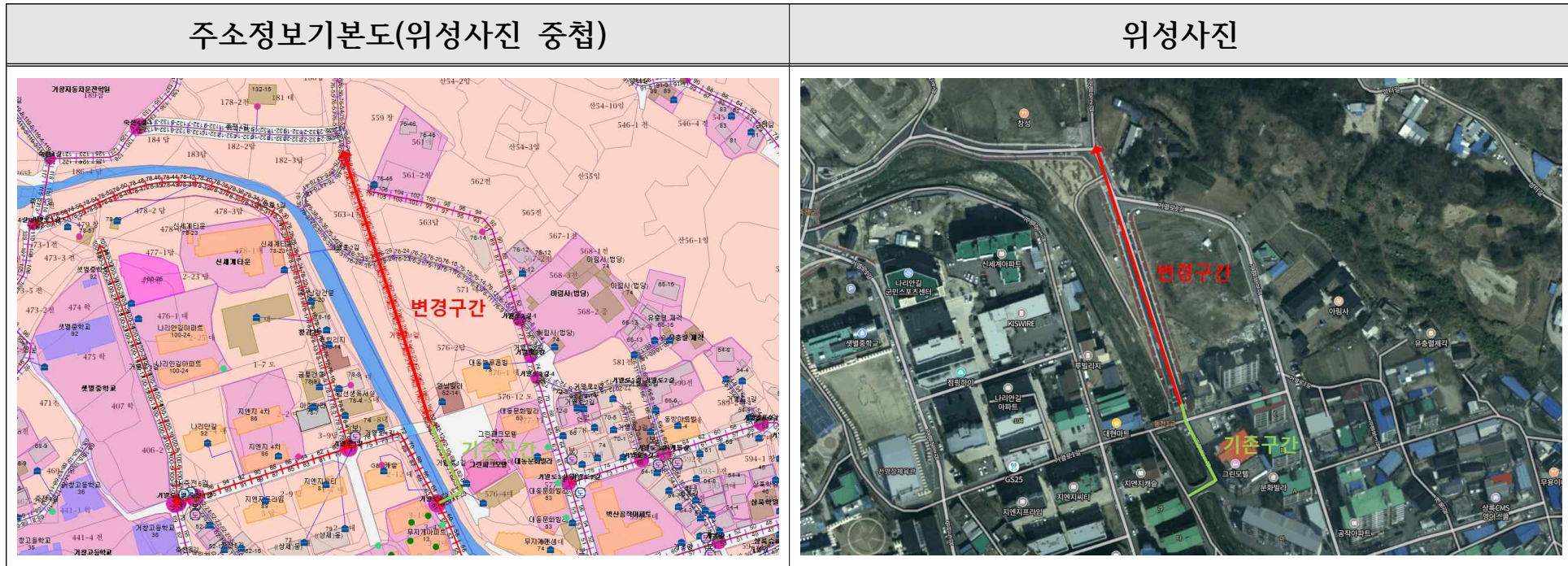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거창읍	변경 전	거열로1길	거창읍 중양리 3-1 (거열로1길 62-1)	거창읍 대동리 506-19 (거열로1길 62-14)	도면참조	4	없음	종속구간 생성(연장)	직권
		변경 후	거열로1길	거창읍 중양리 3-1 (거열로1길 62-1)	거창읍 대동리 559-2 (거열로1길 62-48)	도면참조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안 제4조의 2 신설)
    -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공공 발주공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강화
      -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 공동도급 49%, 하도급 70% 이상
  - 나. 분할 발주 등 규정 신설(안 제3조의 3)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안 제14조)
    - (안 제12조)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
    - (안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 사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529), 이메일(chanung@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8. 11.(금)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바. 문의전화 : 055-940-3533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3(분할발주 등)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발주 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b>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b>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b>제3조의3(분할발주 등)</b>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 할 수 있다.</p>
<p><b>제12조(수당 등)</b>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b>제14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2.>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5. 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09. 2. 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1. 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8. 19., 2022. 9. 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10. 7.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2.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반영 및 관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조항 반영

### 3. 주요내용

#### 가. 관사 운영비 정비(안 제48조)

- 사용자부담 원칙 :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
- 예외적 예산지출 :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의 보수비,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화재보험료 등 주택 관리비

#### 나. 물품의 구분 별표3 수정(안 제55조)

-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소모품에 대한 기

준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

1. 소모품의 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를 10만원 미만의 물품에서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

#### 4. 예고기간 : 2023. 7. 26.(수) ~ 8. 15.(화)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3. 화재보험료 등 주택 관리비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사 운영비)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용, 공작물·구축물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시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li> <li>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li> <li>3.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li> <li>4. 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li> <li>5. 공동주택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li> <li>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1급·2급 관사에 한한다)</li> <li>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li> </ol>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li> <li>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li> <li>3. 그 밖에 화재보험료 등 주택 관리비</li> </ol>

[별표 3]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5조 관련)

### 1.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3.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 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삭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 1) 소모품

#####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또는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않은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50만원 미만인 물품

#####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등-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등-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 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34조(관리전환 등) 별지 정비

1) 오류사항 정비(안 별지제31호)

-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 관리전환의 조건
- 인수자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 인계관서의 장
- 물품관리원 → 물품출납원

4. 예고기간 : 2023. 7. 26.(수) ~ 8. 15.(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물품 ( 관리전환 무상양여 ) 합의서

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명		③소관기관명		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 상태	⑫비고
⑬ (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무상양여 의 조건							
⑭ ( 관리전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p>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 . . . .</p> <p style="margin-left: 150px;">인수인계자 : 인수인계 관서의 장 (인)</p> <p style="margin-left: 200px;">물품관리관 직·성명 (인)</p> <p style="margin-left: 150px;">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직·성명 (인)</p>							
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		⑰소관기관명		⑱회계명			
⑲( )받은 후	⑳물품의 분류						
	㉑물품의 용도						
<p>상기 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 . . . .</p> <p style="margin-left: 150px;">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p> <p style="margin-left: 200px;">물품관리관 직·성명 (인)</p> <p style="margin-left: 150px;">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직·성명 (인)</p>							

(주)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1.

## 거 창 군 수

1. 사업지구의 명칭 :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 영승,양지,수옥지구
2.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653필, 333,900.9m<sup>2</sup>
  - 가. 영승지구 : 마리면 영승리 204-1번지 일원 / 239필, 107,904.9m<sup>2</sup>
  - 나. 양지지구 : 신원면 양지리 101-1번지 일원 / 305필, 190,419.3m<sup>2</sup>
  - 다. 수옥지구 : 신원면 양지리 40-2번지 일원 / 109필, 35,576.7m<sup>2</sup>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3. 7. 21. ~ 2023. 8. 4. / 14일간
6. 공람장소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7.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